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등에 관한 사항

-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않는다
- 2) 이용자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지역신문, 지인소개, 대상자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대상자 파악, 욕구조사, 상담을 진행하여 수급자를 모집합니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의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의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연장된다
계약기간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의하여 결정한다 -서비스를 제공 받기위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타기관 이전,또는 사망하였을 때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대상자가 개인사정으로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때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6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 권리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를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호난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시설만이용가능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0.9, 0.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 (원)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본인 부담금(15%)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 (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 (가정내 목욕제공)
수가	50,100 원	88,990 원	80,230 원
본인부담금	7,515 원	13,349 원	12,035 원

- 1.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3.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40%, 60% 감경 가능